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서 성 용

나. 생 년 월 일: 1981.11.26.

다. 소 속: (주)효성감정평가법인 본사

(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2-6, 102호)

2. 징계내용

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2월

나. 효력발생일: 2023.08.07. ~ 2023.10.06.

다. 사 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, 사정보정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3년 07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